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목 차>

1.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송이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83
	과장	김종훈		이메일	2081001@mail.go.kr

2021. 03.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2.규제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17조,제20조의2		
	3.위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 제8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4.05 ~ 2021.05.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input type="checkbox"/>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서민 대상으로 양성적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인가정책을 운영해 온 측면</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중앙회의 부실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으로서 지출한 출자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조합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li> <li>○ 금융소비자로서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만큼, 중앙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li> </ul> <p>* 상호금융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p> <p>➔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신협 영업구역 확대 등에 따라 상호금융의 영업형태가 저축은행과 유사해진 반면, 건전성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조합간 자산확대 및 대출영업 경쟁이 심화되어 소형 조합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li> </ul> <p>* 예) '90년대 후반 신협 자체 예금보호기금 고갈 사태로 인해 580여개 신협이 구조조정되었으며, 총 4조7,000억원의 재정 투입된 사례</p> <p>⇨ 이에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내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p>		
	7.규제내용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호금융업권 여신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부동산 등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지역 조합 부실로 전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위조합 여신이 기업대출, 부동산·건설업 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업종별 한도 규제 도입</li> </ul>		

		<p>② 단위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조합의 부실이 중앙회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합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조합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도입</li> </ul> <p>③ 상호금융 중앙회 건전성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회 차원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 상향</li> </ul>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td> <td>2,225개 조합</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	2,225개 조합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상호금융업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의 단위조합	2,225개 조합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현행 규제 정비를 통해 업권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 발생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17,544.43		617,544.43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상호금융업권 조합원								
	주요내용	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져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									
11.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몰 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617,544.43	0	93,069.56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5. 유동성에 관한 사항 :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u>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6.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u>업종 및 대출등에 대해서는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u>
<u>&lt;신 설&gt;</u>	
제17조(상환준비금)	제17조(상환준비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은 다음달 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	② 조합은 다음달 5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준비금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 ----- ----- -----

현 행	개 정 안
<p>의 규정에 의한 법인외의 조합에 대하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p>	<p>----- ----- -----.</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상호금융업은 상호간의 인적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에게 신용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 주식회사인 은행 등 금융회사와는 차별화

\* ①지역중심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지역 중심 인적유대 형성  
②직능중심 조합: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특정업종 종사자 중심 인적유대 형성

\*\* 조합원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조합원을 주 영업대상(비조합원 대출한도 등)으로 하며, 모든 조합원이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결권(1인 1표) 보유

□ 국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체로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신협·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 서민 대상으로 양성적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인가정책을 운영해 온 측면

\* 신협법의 경우 신협이 사설 무진회사, 사설 계 등의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72년 8.3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신설 → "사금융의 양성화"가 주목적

□ 지역 서민들이 조합원이자 고객이 되는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조합·중앙회의 부실은 서민층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

○ 조합원으로서 지출한 출자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조합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손실도 가능

○ 금융소비자로서 예치한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닌만큼, 중앙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

\* 상호금융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 상호금융기관 특성상 부실 발생시 지역 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내용	상호금융업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모두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
규제대안2	대안명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내용	신협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 및 업종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 조정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	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조합의 당기 순이익 축소 우려
규제대안2	신협 이외 상호금융업권에 건전성 규제 미도입으로 풍선효과 발생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리스크 악화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상호금융업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건전성 규제 도입에 찬성하나, 이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
금융감독원	건전성 규제 도입 필요성에 찬성	특이사항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 3. 규제목표

- 현행 규제 정비를 통해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 및 조합의 경영건전성 강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각 상호금융기관들이 신용사업 관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법률이 각기 달라 규제차이가 존재

< 상호금융조합 감독·검사 제도 현황 >

구분	감독기관			인허가	검사기관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신협	금융위				금감원 중앙회	금융위 (금감원) (중앙회)
농협	농식품부	금융위 (건전성 감독)	-	농식품부	금감원 (신용사업) 중앙회	주무관청 (중앙회)
수협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산림	산림청		-	산림청		
새마을 금고	행안부*				중앙회 (금감원)*	

\* 행안부장관은 금고·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새마을금고법 §74①)  
 행안부장관은 필요시 금감원장에 금고·중앙회 검사지원요청 가능(새마을금고법 §74④)

- 이에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업권내 규제차이도 해소하는 것으로 비례타당성 존재
- 상호금융업권 개별조합의 여신이 특정 차주업종에 편중되어 경기 변동 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수준의 여신규제 도입 필요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 타법사례

: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도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17,544.43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17,544.43		617,544.4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617,544.43		617,544.43
기업순비용		617,544.43	연간균등순비용	93,069.56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된 개선사항으로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은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를 통해 논의되었던 규제차이 해소방안을 추진하는 것임

###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성 규제도입 근거 마련 이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세부내용을 규정할 계획(‘21년도 하반기)

### 3. 종합결론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상호금융조합이 지역사회 내의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한 지역·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17,544.43		617,544.4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617,544.43		617,544.43
기업순비용		617,544.43	연간균등순비용	93,069.5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져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1 :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
활동제목	대출규제 및 자금운용 변경에 따른 조합의 당기순이익 감소
비용항목	기타
비용	617,544,432,414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p>초과여신 규모 * 손실률 = 당기순이익 감소(억원)  <math>(36,899 \times 0.0271 \times 100,000,000)</math></p> <p>유동자산 부족금액*손실률 = 당기순이익 감소(억원)  <math>(344,687 \times 0.0233 \times 100,000,000)</math></p> <p>준비금 추가적립금액*손실률 = 당기순이익 감소(억원)  <math>(16,058 \times 0.0091 \times 100,000,000)</math></p>
근거설명	<p>1.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p> <p>□ (현황) '20년말 상호금융업권 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 79.1조원으로 총여신(401.1조원)의 19.7% 수준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할 경우 158개(전체의 7.1%) 조합에서 총 3조 6,899억원 여신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li> </ul> <p>□ (영향) 한도 준수를 위해 3조 6,899억원의 대출자산을 축소하면 연간 최대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 예정</p> <p>* 신협 739억원(=25,381×2.91%), 농협 191억원(=8,379×2.28%), 수협 70억원(=3,140×2.23%)  상호금융업권 연간 당기순이익('20년 기준 2조 3,812억원)의 4.2%</p> <p>2.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p> <p>□ (현황) '20.6월말 상호금융업권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63.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성비율 70% 미만 조합은 1,047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 179개, (농협) 810개, (수협) 44개, (산림) 14개</li> <li>○ 다만, 상환준비금의 50%만 유동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타 업권과 상이한 현행 유동성비율을 개선(100% 인정 등)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유동성비율은 80.0%로 상승, 70% 미만 조합은 470개로 감소</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영향)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70~100%)시 대출자산 축소 (34.5조원) 필요, 연간 당기순이익이 8,034억원 감소 예상 3.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 <input type="checkbox"/> (현황) '20년말 신탁의 상환준비금 적립 필요금액은 9조 8,567 억원이며, 이 중 6조 5,589억원(66.5%)을 중앙회에 예치 중 ○ 중앙회 예치비율을 80%로 상향할 경우, 신탁 879개 중 620개가 1조 6,058억원을 중앙회에 추가 예치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영향) 총 620개 신탁에서 자금운용을 변경*(또는 축소)함에 따라 연간 총 146억원(=16,058×0.91%)의 당기순이익 감소 예상 * 부보 금융회사 예치 → 중앙회 상환준비금 예치
--	--

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상호금융업권 조합원
활동제목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짐
편익항목	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부실가능성이 낮아져 지속적인 신용거래가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조합의 건전성이 향상될 경우, 조합의 부실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조합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어 지게 되어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